

의안번호	제1027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5월 30일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27
----------	------

발의연월일 : 2025년 5월 30일

발의자 : 노금식, 이태훈, 김호경,
박용규, 변종오, 임영은,
황영호

1.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과 의료기기가 융합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바이오산업의 핵심 분야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첨단재생의료,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신산업 분야의 명확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바이오산업의 정의에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산업을 명시하여 조례 적용 대상에 포함(안 제2조)
- 나.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에 디지털 의료제품, 첨단재생의료사업 포함.
바이오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바이오 소부장)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내용 신설(안 제13조)

3. 조례안 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디지털의료제품법」

나. 비 용 추 계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다. 협 의 :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첨단바이오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산업

제13조제1항제2호 중 “헬스케어”를 “헬스케어, 디지털 의료제품, 첨단 재생의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바이오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이하 “바이오 소부장” 이라고 한다)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바이오산업”이란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 ----- -----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설>	라.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산업
라. (생략)	마. (현행 라목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2. ----- -- <u>헬스케어, 디지털 의료제</u>

등 신사업 기획 및 연구 사업 3. · 4. (생 략) <u><신 설></u> 5. ~ 8. (생 략) ② · ③ (생 략)	<u>품, 첨단재생의료</u>----- 3. · 4. (현행과 같음) 5. <u>바이오산업 관련 소재 · 부품</u> <u>· 장비(이하 “바이오 소부장”</u> <u>이라고 한다)의 연구개발 및</u> <u>상용화 지원</u>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본 조례안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에 따른 체계적 지원 필요성 제고와 신산업 분야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 수반이 예상되나,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소요 예산규모 예측이 불가하여 제외함